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3,648,984	14,509,470
일반회계	427,294,733	12,818,842
특별회계	56,354,251	1,690,628
공기업특별회계	12,957,970	388,73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957,970	388,739
기타특별회계	43,396,281	1,301,8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15,208	39,456
자활기금특별회계	2,038,197	61,146
수질개선특별회계	34,914,556	1,047,43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777	1,01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189,771	95,693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0,949	7,828
기반시설특별회계	446,284	13,389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08,462	9,254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889,077	26,67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77,19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